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방향

김 순 림*

I. 직장보육사업의 중요성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국가나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 이용대상이 일반 아동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 자녀라는 점에서 다른 시설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탁아제가 도입되어 종전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아닌 ‘직장탁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더불어 ‘직장보육’으로 바뀌어 시행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문제는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출산, 육아기인 30~35세에 현저히 저하되는 M-curve 현상이 지속되어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육아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4년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OECD국가 평균출산율 1.6명, 미국 2.04명, 일본 1.29명). 특히 취업이 곤란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근로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뒤로 미루게 되며, 여성근로자의 이러한 선택이 결국에는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직장보육은 취업모의 일과 가정을 연결하여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감, 자기발전, 사업체 기여 등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 측면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사업은 자녀양육 시기에 있는 기혼여성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정책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산·육아지원정책의 하나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의원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호소하는 친서를 사업주에게 보내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주축이 되어 「육아지원정책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직장보육사업은 최근

* 노동부 고용평등국 여성고용팀 사무관(tree125@hanmail.net).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II. 직장보육시설 설치 근거 및 실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1월 30일부터는 여성근로자 300인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에 의거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

① 단독보육시설 설치 :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장내 또는 인근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시설운영은 사업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비영리 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단독보육시설은 사업주로 볼 때는 설치비 및 운영비 부담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모가 점심시간 등을 통해 자녀를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녀와 같이 출퇴근이 가능하여 이동시간이 최대로 축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공동보육시설 설치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각각의 근로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시설, 운영비용과 책임이 분담되어 단독 직장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보육대상 아동이 소수인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체,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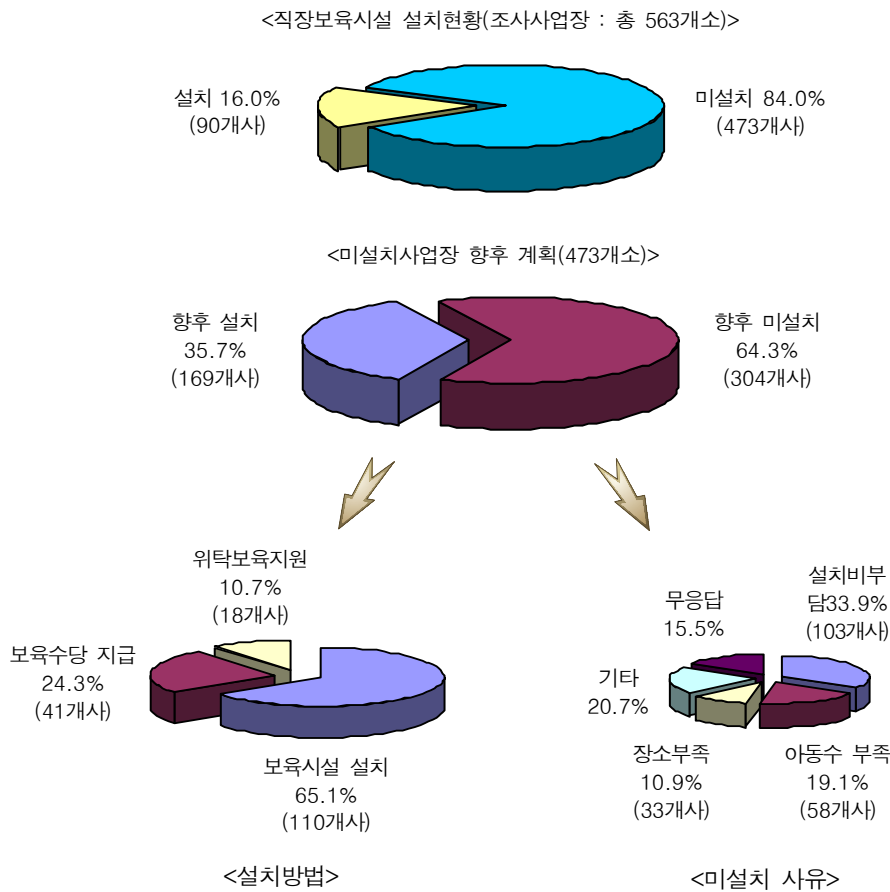
③ 지역보육과의 위탁연계 : 지역의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근로자의 자녀를 특정보육 시설에 위탁하거나, 근로자들이 선택한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④ 보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대신 근로자의 자녀양육 부담을 보육수당(정부보육단가의 1/2 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부모에게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12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 및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의무대상 사업장 563개소 중에 이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90개소이었으며, 향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장이 169개소로 총 의무대상 사업장 46%(259개소)만 의무이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서는 보육대상 아동수가 부족하다든지, 사업장의 형편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다른 재정적 부담으로 설치가 곤란하다든지, 장소가 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그림 1] 직장보육의무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직접지원으로서는 ▲설치비 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간접지원으로는 ▲세제를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지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비용지원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자하거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무상)하는 것으로(병행지원 가능) 등 지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므로 고용보험 비적용사업장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원장, 취사부 포함) 지원으로 지원조건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비율이 1/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원액은 월 80만원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만큼 지원하고 있다(지원비율=고용보험 가입자 아동수/보육아동수).

<표 1>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

지원형태	지원내역	지원내용	세부내역	지원한도
직접지원	설치비용지원	설치비용 용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5억한도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1~2%
			설치비용지원	시설전환비 유구비품비
	운영비용지원	운영비지원	보육교사인건비 (시설장, 취사부 포함)	1인당 월80만원
간접지원	세제지원	○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7/100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IV.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

저출산 대책의 승패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여건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 추진을 통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출산과 육아 문제에 있어 국가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구성원을 만드는 일이므로 ‘육아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기업의 생산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직장보육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신규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400여개소)의 사업주는 특히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번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육아동수 부족 및 재정부담을 들고 있다. 사실 보육아동수가 부족하여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대체되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무상지원의 폭을 넓혀 지원할 계획에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어 이제 월 80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고 지원범위도 보육교사 이외에 원장, 취사부도 지원하는 등 이제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기업 하나하나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기업, 또는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아 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지원은 의무사업장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가 등이 필요한 다소 생소한 업무일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노하우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 자료제공, 보육프로그램 보급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말 50.1%로 OECD국가 평균 59.6%보다 낮은 등 전반적으로 여성인력 활용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장보육사업은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사업주도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KL**